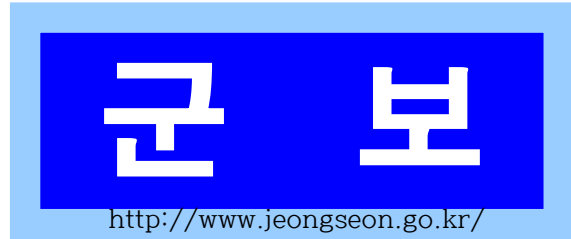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8호 2011. 8. 3.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432호 2011년 2학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안내..... 4
- 정선군공고 제2011-433호 2011년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8
- 정선군공고 제2011-443호 수려안아파트 신축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9
- 정선군공고 제2011-445호 2011년 재가진폐환자 일자리조성 지원사업 연장 공고..... 10
- 정선군공고 제2011-449호 2011년도 7월중 수시분(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13

【기 타】

- 강원도공고 제2011-659호 2011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14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1-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1년 군도3호(단임)도로 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3.

정 선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단위 : km)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금화연장)	⑥중 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 유	⑧비고
도로 구역 결정	군 도	군도3호 (단임)	[전체구간] 시점 : 정선읍 용탄리 종점 : 북평면 숙암리 [금회] 시점 : 북평면 숙암리 303번지 종점 : 북평면 숙암리 282-4번지	39.5 (0.28)	이 절 남 평 한 골 숙 암	2011 군도3호 (단임)도로포장 공사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11.08~2011.12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및 북평면산업개발팀 비치)

6.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북평면 산업개발팀(033-560-2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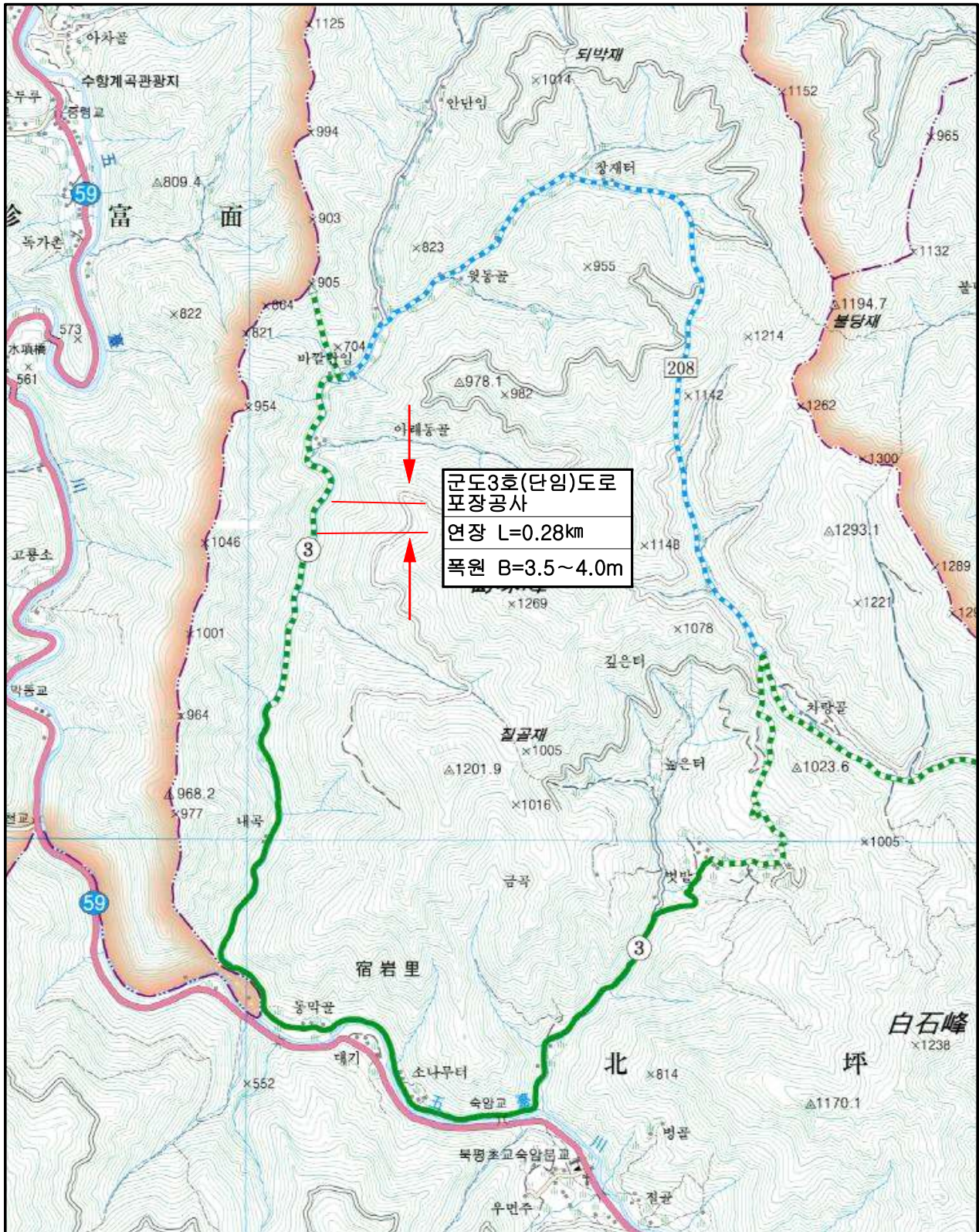
○ 도로구역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및
정선군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
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2011 군도3호(단임)도로 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합계				97,011	1,440				
1	북평면 숙암리	산69-1	임	1,231	834	국	산림청		
2	북평면 숙암리	산69-2	임	129	129	국	산림청		
3	북평면 숙암리	산70-1	임	339	307	국	산림청		
4	북평면 숙암리	302-1	도	387	71		정선군		
5	북평면 숙암리	638	구	94,925	99	국	국토해양부		
6									

도로구역 위치도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1-432호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안내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자금을 지원하오니, 해당 자격 및 요건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폐광지역진흥지구내(태백, 삼척, 영월, 정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 지원기준
 - 재학생 : 200만원(학기당)
 - ※ 학자금 지원 : 입학·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 금액중 학기별 지원한도 금액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은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 거주지 : 사업대상자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8.26일) 6개월 이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 학점 및 성적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 기준
 - * 성적 백분위 점수는 소속대학별 학사운영규정 산출방식 적용
- 신청기간 : 2011. 8. 16. ~ 2011. 8. 26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명의	비 고
1	공통사항	학자금 신청서 및 서약서		“첨부1”
2		성적증명서 (재학생)	본인	백분위 점수 기재 (백분율과 혼동 주의)
3		재학증명서	본인	
4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본인	
5		주민등록등본	부모, 본인	‘11.2.26일 이전일에 주민등록되어있을 것.
6		통장사본	부모	보호자(세대주)통장

7	복지제도 증명서 발급가능한 경우 해당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본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자활근로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복지제도 증명서 발급이 되지않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월납부확인서 (‘11.1월~6월)	부모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11.1월이후 발급된것)	부모 모두	피부양자 등재여부 확인(형제, 자매 포함)

건강보험료에 의한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A*1.2)	639,099	1,088,196	1,407,745	1,727,295	2,046,844	2,366,394	2,685,944
월 건강보험료 (A*1.2*0.0282)	18,022	30,687	39,698	48,709	57,721	66,732	75,743

‘11년 1월~6월 부모 및 본인 합산(형제, 자매 피부양자 포함) 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실적이 각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보건복지부 ‘11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에 따름

○ 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령 배제

- 타 장학금 범위 :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과,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는 장학금은 예외 인정

○ 학자금 보전(추가지급)

- 타 장학금 수령액이 본 학자금 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에 의해 그 차액만큼 추가 지급 (단, 학기별 지원금액 한도)

○ 중복수령의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 학자금의 전액 반환 및 향후 지원중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수혜시 본 학자금으로 상환 조치
- ※ 미상환시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자격 중단으로 학생 불이익 우려
- 학자금 신청시 중복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학자금 지원 중단 및 반환

-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학자금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읍·면사무소 및 군청 지역경제과(☎ 560-2356), 도 탄광지역개발과 (☎249-2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21.

정 선 군 수

'11년 2학기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서

학 생 인적사항	이 름	(남,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일반전화	
	학 교 명		전 공	
	학 번		학적상태	학년 학기에정
보 호 자 인적사항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저소득층유형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일반전화	
신 청 내 역	신청금액	금 원 (W 원) ※만원미만 절사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은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으로서 타 기관 장학금을 이중 수혜한 사실이 없으며, 학자금 지원을 받는 동안 이중 수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중 수혜한 때에는 지원받은 학자금 전액을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반환하기로 확약하며, 향후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학적변동으로 인해 잔여 등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지원받은 학자금을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반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1. . .

신 청 인 학부모 (서명)
 학 생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비발급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여부, 거주지역,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일, 첨부서류 구비확인
읍·면 담당자 (인)

정선군공고 제2011-433호

2011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2011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

정 선 군 수

1. 주 관 : 정선군

2. 추천기간 : 2011. 8. 1. ~ 8. 26.(26일간)

3. 시상부문 및 추천기준

부문	추천 기준	추천 자
문화 체육	문화, 예술, 교육, 군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원장,학술및문화 예술 단체장,각급학교 장,체육단체장,읍면장
지역 개발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각 사회단체장,읍면장
농림 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 산업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하고 있는자로 지역 주민의 농림업소득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각 기업체대표, 농협. 축협, 산림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읍면장
사회 봉사	지역사회에 헌신봉사 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각 사회단체장, 주민 생활지원실장,읍면장
환경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환경관련단체장,환경 산림과장,읍면장

○ 공통기준 :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공적기간은 기준일 현재 3년 이내의 공적으로 함

4. 추천 제외대상

- 당해년도 향토민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
- 향토민상을 동일 부문으로 1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5. 추천 구비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읍면사무소 비치)
-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요약서 포함)
- 이력서 1통(단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함)
-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기타 공적 증빙자료

6. 수상자 결정

-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7. 시 상

- 별도 지정

8. 제출처(문의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242), 또는 읍·면 총무부서

정선군공고 제2011-443호

『수려안아파트 신축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서주종합건설(주)에서 실시한 신동읍 「수려안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폐쇄 및 지적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1. 7. 28.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수려안아파트 신축공사
2. 공고기간 : 2011.07.29 ~ 2011.08.12(15일)
3. 지적공부 시행 : 2011. 07. 28.
4. 확정시행 지적공부 (총 5필지 / 17,780.8㎡)

토지소재	종전 지적공부(폐쇄)		확정 지적공부	
	필 수	면 적(㎡)	필 수	면 적(㎡)
남 면 문곡리	46	17,762	5	17,780.8

5.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군청 민원봉사과(☎560-2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445호

2011년도 재가 진폐자 일자리조성 지원사업(연장) 공고

2011년도 재가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30.

정 선 군 수

1. 사업 목적

- 과거 탄광에서 일하던 근로자중 일부는 진폐증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사업 기본 방향

- 재가 진폐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자 단체의 근로성 일자리 조성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정부(산하 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가 진폐자 지원사업과 중복 배제

3. 사업 예산 : 400백만원 (고용보조금 200백만원, 사업개발지원 200백만원)

4. 사업 기간 : 2011. 9월 ~ 2011. 12월

5. 응모자격

- 5-1 강원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한 시·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재가 진폐자를 1명이상 상시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 5-2 강원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한 시·군의 진폐재해자 단체 및 진폐재해자로 구성된 공동체

6.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내용	지원금액	지원조건	응모자격	비 고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신청인원 1인당 7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예산액: 200백만원)	· 지원업종 : 제조업 · 신청인원 : 2011년 하반기중 재가진폐 재해자를 고용하는 인원수 · 지원한도 : 회계년도내 1개 기업당 10명 이내 · 고용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 단위 또는 일시에 지원금 사후지급 · 고용주는 1년이상 고용유지의무 및 신청인원 고용보험 가입 · 고용유지의무 위반시 잔여 지원금 중단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5-1	· 사업신청자 미달 또는 사업내용별 지원자액 발생 예정지에는 총예산 한도내에서 사업내용별 예산액을 상호 증감 조정 가능
사업개발 지원 (사업부지· 건물 임차료 및 시설비)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 (예산액: 200백만원)	· 지원업종 : 식품가공업, 영농업, 서비스업 · 부지·토지 임차료 및 시설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합산하여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자료를 기초로 지원금 사후지급 ※시설비 : 기계류 구입비, 영농시설비, 사업에 필요한 자재비	5-2	

7. 제출서류

사업내용	신청서류	지원대상 선정후 제출서류	비 고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 신청서 (서식 1) · 고용계획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유지의무 이행각서(서식 3) · 신청업체 현황	· 고용내역서 · 진폐등급서류 · 근로계약서사본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사업개발 지원 (사업부지· 건물 임차료 및 시설비)	· 신청서 (서식 4) · 사업계획서 (서식 5) · 신청업체 또는 단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차료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송금내역 등) · 공사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 시설비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8.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1) 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 (2)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자부담에 대한 능력
- (3)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등

○ 선정결과 : 개별통보

9. 사업 추진 체계

도 <관광지역개발과>	시·군 <사업주관부서>	법인 및 단체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심사 및 선정 · 시·군 사업예산 내시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진달 · 지원선정사업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 지원 및 사후 관리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계획 신청 · 지원선정된 사업 시행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10. 신청 안내

- 신청서 제출기한 : 2011. 8 26(금)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신청서류 제출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우 233-701)
 - 담당자 : 이정원 (TEL : 560-2356, FAX : 560-2594)

11.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방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름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사업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 및 단체는 향후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449 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정선바이오헬스 외 4인(“별첨”)

주소또는거소 : “별첨”

서류의 명칭 : 2011년도 7월중 수시분(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11년도 7월중 수시분(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위의 서류를 2011년 07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일인 2011년 08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8. 01.

정 선 군 수

기 타

강원도 공고 제2011-65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29.

강 원 도 지 사

- 다 음 -

1. 지정기간 : 2011년 8월 3일 ~ 2016년 8월 2일
2. 대상지역 :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부 65.1km²
 -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차항리, 황계리, 수하리, 용산리 일부 16,552필지 61.1km²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부 479필지 4.0km²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 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m ² 초과시 200m ² 초과시 660m ² 초과시 100m ² 초과시 90m ²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임야 기타	500m ² 초과시 1,000m ² 초과시 250m ² 초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 및 지번별조서

- 위치도면 : 열람장소 비치
- 지번별조서 : 「붙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번별조서 참조

※ 지번별조서에서 누락된 토지와 추가 분할되는 필지 등은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을 기준으로 함.

5. 열람장소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263, 330-2375),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262, 560-2263)

6. 기타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청 토지관리과(033-249-3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